

자가용자동차사용(신규, 변경, 폐지)신고서						
사용자	①성명(법인명)			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
	③주 소					
자동차	④차 종		⑤차량번호		⑥승차정원 (적재톤수)	
	⑦ 사 용 목 적					
⑧ 변 경 사 항 (변 경 시)						
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시 · 도지사 [인]						
구비서류 차고시설(임대차고를 포함합니다)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						

33331-24411 민

210 mm × 297 mm

'94.9.9 승인

(신문용지 54g/m²)

※ 신 고 안 내

신청하는 곳	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. 군. 구	처 리 부 서	지 역 교 통 과
수 수 료		처 리 기 간	1일
유의사항 ○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됩니다.(법 제58조) 이를 위반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(법 제72조) ○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사항의 폐지신고는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(법 제56조)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			
차고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안내 ○ 자기소유차고 ·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· 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(토지경계선, 자동차출입구,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등 표시) ○ 임대차고 · 주 차 장 : 주차장사용계약서 · 임대건물 : 건축물관리대장 · 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· 임대토지 :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			